제5장

# 동아시아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 경험적 분석의 기초

## Universalism and Relativism of Human Rights in East Asia: An Empirical Analysis

송영훈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동아시아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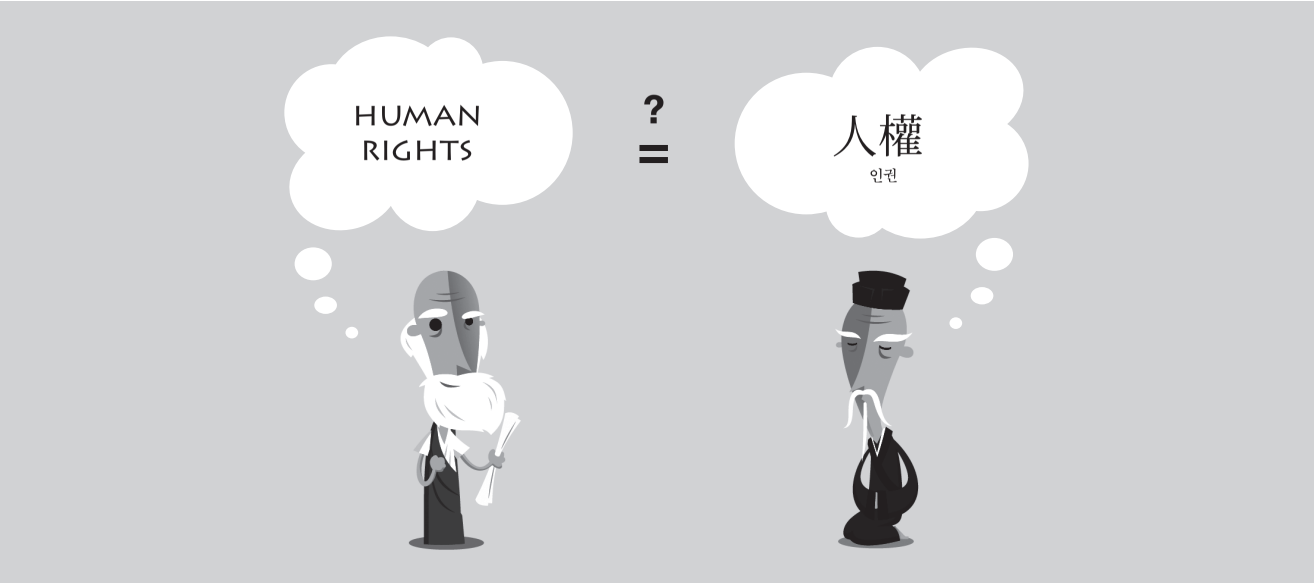

인권이 무엇인가라는 존재론적 질문보다 인권을 어떻게 관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인식론적이고 방법론적인 질문을 탐구한다. 그동안 인권이 무엇이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질문, 그리고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비판은 보편적 세계인권선언이 제정되면서부터 진행되어왔다. 이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국제인권법을 수용하는 방식과 각국별 인권현황을 비교함으로써 동아시아 국가들이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대내적 동질성과 대외적 이질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국제인권법을 수용하는 방식이 다른 지역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사실과, 각국의 인권보호의 수준은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아시아 인권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주장들과 달리 경험적 분석의 결과는 다른 지역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인권을 정치적 의제로 인식하고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answer the question of how human rights issues can be empirically analyzed with regard to controversies between universalism and relativism. Since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ere proposed, politicians, scholars, and journalists have criticized the assumption of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rguing that human rights developed in the Western Europe cannot be universally applicable to the other regions without sacrificing the respect of cultural d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hypothesis that East Asian countries have common attitudes toward recogniz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distinguishable from those of other countries. The empirical

analysis demonstrates that East Asian countries put more emphasis on national interests than on the human rights protection and that the level of human rights protectio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democracy in each country over time. In contrast to the expectation of relativism, the findings imply that East Asian countries have very different interests in recogniz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each country politicizes to varying degrees human rights issues like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KEYWORDS** 인권 human rights, 동아시아 East Asia, 보편성 universalism, 상대성 relativism, 민주주의 democracy

## I 문제제기

오늘날 인류에게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하고 실제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된다. 그리고 인권이라는 말은 우리들의 삶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상의 언어가 되고 있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문화적, 제도적 환경이 달라 개인들이 갈망하는 것이 서로 다르지만, 갈망하는 것은 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서술된다. 예를 들면 억압받는 독재정권 아래에 있는 개인들은 시민적, 권리적 자유를, 선진국가의 개인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유를, 내전 혹은 엄청난 자연재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refugee)과 국내유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들은 생존과 안전에 대한 자유를 갈망한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 갈망하는 인권을 누구나 합의에 이를 수 있게 정의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은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권은 종종 인간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권리이자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자연권이면서 동시에 선험적(a priori) 최고선(summum bonum)으로 추상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모든 인간이 실현해야 하는 궁극의 목표로 이해된다. 인권이라는 이름의 보편적 원칙들을 실현할 수 있다면 질서와 화합, 정의와 복지 등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고선으로서의 인권도 결국 서로 다른 눈높이, 관점, 실현의 방식 등에 있어서 너무나 달리 이해된다. 높은 추상성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인권이 무엇인가라는 존재론적 질문, 그리고 인권은 어떻게 보호될 것인가에 대한 인식론적 질문에 대해 개인, 사회, 공동체마다 서로 다른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이 무엇이며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하는 질문은 다양한 학문과 정책 분야에서 다루어 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한국사회에서도 인권의 '현대성과 보편성'(문성원 1998; 박주원 2013), '보편성과 아시아적 가치'(도널리 1996), '상대적 보편성'(정영선 2000; 김남국 2010),'보편성과 내정불간섭'(변창구 2011) 등과 관련된 철학적 논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동아시아'를 개념적으로 추상화시키기도 하고, 의인화시키기도 하는 가운데 '동아시아 인권'은 지리적으로 동아시아에 사는 개인들의 인권이면서 동아시아 전체의 인권으로 상징되기도 한다(한상진 1996; 벨 1996). 이와 같은 인권문제에 대한 철학적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인권의 특성을 어떻게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로 다른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개인들이 갈망하는 인권의 특성을 어떻게 관찰할 수 있을 것인가? 인권을 선험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개인들이 저마다 인권을 이해하는 지표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을 국가별, 지역별로 중첩하여 살펴본다면 인권의 전체적 모습은 아니더라도 인권상황의 부분적 단면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인권에 관한 철학적 논쟁보다 인권의 보편성 혹은 상대성을 어떻게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탐구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의 핵심질문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

사발전, 정치변화, 경제발전 등이 유럽의 그것들과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인권도 서구의 것과 달리 특수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어떻게 경험적으로 평가할 것인가이다. 동아시아 인권이 다른 지역의 인권과 다르다면 동아시아 인권은 대외적 이질성과 대내적 동질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철학적 담론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이러한 가설적 주장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앞으로 담론분석을 넘어 과학적 관찰에 기초한 인권 분석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다음 절은 인권의 상대성 주장이 과학적으로 수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경험적 가설을 인권의 대외적 이질성과 대내적 동질성의 측면에서 제시한다. III절은 유엔조약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국제인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식을 통해 동아시아 인권의 특성을 진단한다. IV절은 인권에 대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 정부가 개인들의 인권을 얼마나 보호하는지 혹은 얼마나 침해하는지를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의 지표를 통하여 설명함으로써 국내 인권정책도 지역 차원의 이질성과 지역 내 동질성의 차원에서 평가한다. 그리고 인권이 가장 정치화되기 쉬운 난민문제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태도도 분석하고 있다. 이 글은 인권연구에서 존재론적 접근만이 아니라 인식론적이고 방법론적 접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 II 인권 상대주의에 대한 경험적 가설: 대외적 이질성과 대내적 동질성

인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된 정의에 이르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의에는 '인간존엄'의 보호와 실현,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박탈할 수 없는 '가치'의 보호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에 대한 보편주의적 견해를 취하든 상대주의적 견해를 취하든, 이와 같은 인권의 핵심적 요소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대해 보편주의적 접근과 상대주의적 접근이 경쟁하는 것은 인권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차이보다 어떻게 인권의 본질적 속성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 견해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단독 존재로서의 인간을 강조하는 세계시민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책임은 전 세계인 모두에게 있다. 인권이 인간이 태어나면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개인으로부터 인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웃 나라의 시민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자신도 진정 행복할 수 없으며, 이웃 나라 시민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인권도 보장되기 어렵다. 이러한 시각에서 개인들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보호에 대해 책임이 있다(Beitz 1979, 1983; Donnelly 2003; O'Neill 2008; Singer and Singer 1988).

반면, 인권의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은 경계가 명확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인권실현을 추구할 때 그들의 인권이 가장 효과적으로 증진된다고 증진된다고 한다

(Barry 1992; Frost 1996; Walzer 1983; Weiner 1996). 공동체의 수준 혹은 단위가 다양할 수 있지만, 주권국가로 구성되는 국제체계에서 공동체 단위는 국가수준에서 규정된다. 따라서 인권의 상대주의는 내정불간섭의 원칙과 결부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인권의 상대주의는 지역 내 국가들이 문화적 동질성을 보유하며 다른 지역의 국가들과 구분되는 인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공유하고 있음을 가정한다.

'보편적 선언'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보편적 가치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인권의 보편주의적 시각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를 거치면서 각기 다른 특징을 보여왔다. 첫째, 보편적 인권개념에 대한 비판은 1947년 미국인류학회에서 먼저 제기되었다(AAA 1947). 미국인류학회는 당시 준비 중이던 국제인권선언(International Bill of Rights)이 서유럽과 북아메리카 국가들에서 널리 인정되는 권리들에 대한 선언이기 때문에 선언의 권리들이 모든 인류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것이 인종주의(ethnocentrism)와 문화적 우월의식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Morsink 1999). 이는 국제사회가 식민지 국가 등을 포함하여 모든 사회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미국인류학회의 성명은 다음 세 가지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AAA 1947). 첫째, 개인들은 개인의 인격을 문화를 통해 실현하기 때문에 개인적 차이에 대한 존중은 곧 문화적 차이에 대한 존중을 수반한다. 둘째, 문화 간 차이에 대한 존중은 문화를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과학적 근거

에 의해 타당한 것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셋째, 어느 한 문화의 신념과 도덕적 코드에서 도출된 기준과 가치를 인간 전체에게 적용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견해는 한 사회의 인권으로 인식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시기의 사람들에게는 반사회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신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문화다원주의, 구성주의, 인권의 상대주의 등의 이론적 토대가 되고 있다(Goodale 2009; Charlesworth 2010; Gregg 2012; Renteln 2013).

미국인류학회는 1947년 성명에서 제시한 보편주의에 대한 회의적 견해를 1999년의 성명에서 일부 수정하였다. 이 성명에서 미국인류학회는 문화와 인간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 기본적 인권을 거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인간은 문화적, 사회적, 언어적, 심리학적, 생물학적 감각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AAA 1999).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국제법에 제시된 인권을 모두 수용한 것이라기보다 국제법에 제시된 권리들이 실제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 실효성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인권이 국제법에 제시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Engle 2001).

둘째, 1970년대에 이르러 보편적 인권에 대한 비판은 문화상대주의로부터 나온다. 이 당시 문화상대주의는 기술적 상대주의(descriptive relativism)와 규범적 상대주의(normative relativism)로 구분된다. 기술적 상대주의는 인권이 실제로 보편적이지 않다는 증거로서 문화와 주권국가들 사이에서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한 점을 지적한다(DeLaet 2006, 45). 세계인권선언에 제시된 인

권개념이 서구의 전통에서 도출된 것이며, 세계인권선언 작성 과정에 참여한 비서구권 인사들도 서구에서 교육을 받아 본국의 문화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조효제 2007, 25).

규범적 상대주의는 인권의 주요 결정 요인은 문화와 사회적 맥락이라고 주장한다(Delaet 2006, 45). 특히 문화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의 시각에서 보편적 인권개념은 인권을 빌미로 타문화의 가치체계를 부정하고 획일적 기준을 강요함으로써 다른 문화를 식민지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인권을 정의와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해함으로써 인권, 정치민주화, 시장경제의 확산 등은 서구 세계가 다른 세계를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된다(Mutua 2002). 따라서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 등은 경제발전이 절실한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가에게 서구의 문화와 가치체계의 기준과 원칙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국제적 불평등을 공고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1999).

셋째, 1990년대의 보편적 인권개념에 대한 비판은 '아시아적 가치' 논쟁에서 비롯된다.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쟁은 정치인들 사이에서 시작되었다. 싱가포르 리콴유 수상은 아시아의 경제성장의 원인을 유교문화권의 특성에서 찾으면서 서구 문화의 기준을 아시아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아시아는 아시아만의 문화적 기준과 공동체주의적 가치체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Zakaria 1994). 이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시아적 가치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보호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권위주의적 정치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음을 강력히 비

판하였다(Kim 1994). 아시아적 가치 논쟁은 기술적 상대주의와 규범적 상대주의가 혼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정치화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이 특징이다.

아시아적 가치 논쟁의 핵심은 아시아 국가들의 압축적 경제성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있다. 그런데 아시아의 성장을 아시아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전까지 장기간에 걸친 아시아의 침체기도 아시아적 가치로 설명되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아시아 문화가 경제, 인권, 민주주의의 발전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아시아 문화는 변하지 않는 상수로 설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화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은 쉽게 성립되기 어렵다. 상대주의의 기본적 특성은 지리적, 문화적 차이만이 아니라 시간적 맥락에 따른 차이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즉 같은 문화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속성이 변화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적 가치 논쟁은 서구와 아시아를 대별하는 효과를 가져 오지만 아시아 내에서의 차이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인권의 보편주의에 대한 상대주의적 비판은 인권개념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게 된다. 인권이라는 개념에 지역이 형용사로 쓰일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논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동아시아 인권' 혹은 '북한 인권' 등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가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의제이다. 인권의 보편성 혹은 상대성을 강조하면서 인권을 지나치게 정치화하기 때문이다. 인권보호의 일차적 책임을 주권국가로 삼는 현재 국제정치에서 각국의 인

권상황에 대한 비판은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된다. 주권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될 때, 동아시아 인권과 같은 개념은 종종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의 정치체계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런데 동아시아 인권이 유럽의 체계와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상대주의적 주장이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는 동질적 특성이 있고 다른 국가들 사이에는 이질적 특성이 있어야 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국제규범으로서의 인권을 수용하고 실현하는 수준과 방식이 대내적으로 유사해야 하며, 리콴유가 주장한 바와 같이 다른 지역의 국가들과는 다른 행태를 보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인권이 다른 지역의 인권과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다음의 가설적 주장들이 타당한 것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 가설 1-a: (**국제규범의 대외적 이질성**) 동아시아 인권이 특수한 성격이 있다면 동아시아 국가의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다른 지역 국가들과 구분되는 경향을 보여 줄 것이다.
- 가설 1-b: (**국제규범에 대한 대내적 동질성**) 동아시아 인권이 특수한 성격이 있다면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비슷한 경향을 보여 줄 것이다.
- 가설 2-a: (**인권현황의 대외적 이질성**) 동아시아 인권이 특수한 성격이 있다면 동아시아 국가의 인권현황이 다른 지역 국가들의 인권현황과 구분되는 경향을 보여 줄 것이다.
- 가설 2-b: (**인권현황의 대내적 동질성**) 동아시아 인권이 특수한 성격이 있다면 동아시아 국가의 인권현황이 역내 다른 국가들

의 그것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 줄 것이다.

이러한 가설적 주장들은 국제규범과 인권현황의 측면에서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우선 이 글은 국제인권의 종류와 그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여러 국제인권법을 비준하는 시기와 유보하고자 하는 인권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국제사회에서 각국별 인권실현의 수준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들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권현황의 특징을 설명한다.

## III 국제인권의 종류와 동아시아적 수용

동아시아의 인권은 특수한가를 설명하기에 앞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범주화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자주 접하지만,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모든 것을 망라하는 인권목록을 제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한 작업일 수 있다. 또한 인권의 목록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로 인해 현재까지 인지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인권목록을 국제적 보호의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국제인권법에 제시된 인권들은 일반적 인권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일 뿐 인권보호를 위한 실제 원칙의 적용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한국의 국내법도 국제인권법과 마찬가지로 인권의 목록을 일

일이 열거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법」(법률 제11413호)은 인권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하고 1)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2)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3) 국제관습법 등이 인정하는 권리라는 일반적 인권원칙만을 제시하고 있다. 법체계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질서 및 국제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인권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구체적 목록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인권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인권보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일반적 인권원칙들은 무엇인가? 우선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인권원칙은 국제인권조약에 나타나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유엔은 인권 관련 조약으로 16개의 국제인권법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국제사회의 인권보호와 인도적 활동의 토대가 되고 있지만, 국가들의 비준에 의해 채택된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조약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엔이 제시하는 국제인권조약에 나타난 인권의 목록을 통해 국제사회가 수용하는 인권원칙을 유추할 수 있다.

유엔이 제시하고 있는 국제인권조약 중 기존에 존재하는 국제인권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정된 조약, 지역적 제한을 두고 있는 조약, 그리고 1960년대 이전에 맺어진 조약을 제외하면 8개의 국제인권법이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의 근간이 되는 이 법들은 인종차별철폐협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협약, 고문방지협약, 어린이·청소년 권리협

**표 1.** 대표적인 국제인권법

| 조약 | 체결일 | 발효일 | 서명국 | 당사국 |
|---|---|---|---|---|
| 인종차별철폐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CERD) | 66.03.07 | 69.01.04 | 87 | 177 |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 66.12.16 | 76.01.03 | 70 | 162 |
|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 66.12.16 | 76.03.23 | 74 | 168 |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 79.12.18 | 81.09.03 | 99 | 188 |
| 고문방지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AT) | 84.12.10 | 87.01.26 | 81 | 155 |
| 어린이 · 청소년 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 89.11.20 | 90.09.02 | 140 | 194 |
| 국제이주노동자 권리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ICPRMW) | 90.12.18 | 03.07.01 | 37 | 47 |
| 장애인 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 06.12.13 | 08.05.03 | 158 | 150 |

자료: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https://treaties.un.org/(검색일: 2014년 9월 30일).

약, 국제이주노동자 권리협약, 장애인 권리협약 등이 있다. 〈표 1〉은 이 국제인권법의 목록과 조약체결일, 발효일, 서명국의 수, 당사국의 수 등을 보여 준다.

여덟 개의 국제인권법 현황을 살펴보면, 국제사회는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협약 체결 후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 1년 6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다른 협약에 비해

짧았다. 어린이·청소년, 여성에 관한 두 조약은 각각 194개, 188개의 당사국을 보유하고 있다. 장애인 권리협약은 가장 최근에 효력을 발휘한 인권법이지만 가장 많은 서명국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국제이주노동자 권리협약에 서명한 국가는 37개 국가이며, 당사국도 47개 국가에 불과하며 협약 체결 후 효력을 발휘하기까지 약 12년 5개월로 가장 오래 걸렸다. 이러한 현실은 세계화 시대 물자와 화폐 등은 국경을 넘는 이동이 더 자유로워지지만, 노동을 위한 인간의 이주는 각국의 경제와 안보의 위협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개방보다 통제를 지향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상황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각국별 혹은 지역별로 인권원칙과 인권의 목록을 수용하는 태도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첫째, 국가들이 국제인권법에 당사국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국가들이 당사국으로 참여하면서 유보조항을 추가하는지 혹은 유보조항을 추가한다면 어떤 인권원칙 혹은 인권목록에 대해 거부 또는 유보하고자 하는지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지역별 비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에 대한 철학적 논쟁을 넘어서 실제 국가적 혹은 지역적 행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표 2〉에 나타난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제인권법 당사국 가입 시기에 의하면 동아시아 국가 모두가 당사국인 국제인권법은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어린이·청소년 권리협약이다. 당사국의 수만으로 평가한다면 이는 〈표 1〉의 세계적 차원의 현상과 차이가 없다. 여성과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점차 지구

**표 2.** 국제인권법 당사국 가입시기

| 지역 | 국가 | ICERD<br>66.3.7<br>177 | ICESCR<br>66.12.16<br>162 | ICCPR<br>66.12.16<br>168 | CEDAW<br>79.12.18<br>188 | CAT<br>84.12.10<br>155 | CRC<br>89.11.20<br>194 | ICPRMW<br>90.12.18<br>47 | CRPD<br>06.12.13<br>150 |
|---|---|---|---|---|---|---|---|---|---|
| 동북아 | 중국 | 81.12.29 | 01.5.27 | 98.10.5 | 80.11.4 | 88.10.4 | 92.3.2 | — | 08.8.1 |
| | 북한 | — | 81.9.14 | 81.9.14 | 01.2.27 | — | 90.9.21 | — | — |
| | 일본 | 95.12.15 | 79.6.21 | 79.6.21 | 85.6.25 | 99.6.29 | 94.4.22 | — | 14.1.20 |
| | 몽골 | 69.8.6 | 74.11.18 | 74.11.28 | 81.7.20 | 02.1.24 | 90.7.5 | — | 09.5.13 |
| | 한국 | 78.12.5 | 90.4.10 | 90.4.10 | 84.12.7 | 95.1.9 | 91.11.20 | — | 08.12.11 |
| 아세안 | 브루나이 | — | — | — | 06.5.24 | — | 95.12.27 | — | — |
| | 캄보디아 | 83.11.28 | 92.5.26 | 92.5.26 | 92.10.15 | 92.10.15 | 92.10.15 | — | 12.12.20 |
| | 인도네시아 | 99.6.25 | 06.2.23 | 06.2.23 | 84.9.13 | 98.10.28 | 90.9.5 | 12.5.31 | 11.11.30 |
| | 라오스 | 74.2.24 | 07.2.13 | — | 81.8.14 | 12.9.26 | 91.5.8 | — | 09.9.25 |
| | 말레이시아 | — | — | — | 95.7.5 | — | 95.2.17 | — | 10.7.19 |
| | 미얀마 | — | — | — | 97.7.22 | — | 91.7.15 | — | 11.12.7 |
| | 필리핀 | 67.9.15 | 74.6.7 | 86.10.23 | 81.8.5 | 86.6.18 | 90.8.21 | 95.7.5 | 08.4.15 |
| | 싱가폴 | — | — | — | 95.10.5 | — | 95.10.5 | — | 13.7.18 |
| | 태국 | 03.1.28 | 99.9.15 | 96.10.29 | 85.8.9 | 07.10.2 | 92.5.27 | — | 08.7.29 |
| | 베트남 | 82.6.9 | 82.9.24 | 82.9.24 | 82.2.17 | — | 90.2.28 | — | — |

자료: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https://treaties.un.org/(검색일: 2014년 9월 30일).
참조: 국가 배열 순서는 영어의 알파벳 순서에 따른다.

적으로 수용되는 인권의 내용과 차이가 없다. 이와 관련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제인권법 가입 행태가 대외적으로 특수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내적으로도 동북아시아와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일본이 장애인 권리협약에 당사국으로 가입한 시기가 가장 늦었지만 인도적 성격의 의제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국제적 규범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을 하면서 중국과 태국은 협약에 의해서 체약국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분쟁당사국이 해결방법에 합의하지 않는 한 분쟁당사국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판결토록 한다는 조항을 유보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일반적 주권의 원칙, 내정불간섭 등의 원칙을 내세우며 자국 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일본은 인종적 우월성을 지닌 집단에 의한 활동을 의법 처벌하는 범죄로 인정한다는 조항에 대해서 그 해석이 일본헌법에 합치해야 하는 것으로 유보조항을 삽입하였다.

장애인 권리협약에 가입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유보하고자 하였던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한국과 싱가폴은 장애인이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유보하고자 하였고, 일본은 장애인의 교육을 위한 교사채용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의무조항을 유보하고자 하였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장애인의 국적취득 제한에 대해 협약에 준거하기보다 자국의 헌법에 의해 우선적으로 해석할 것을 유보조항으로 하였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협약 상 조항들을 유보하고자 하는 근거로 자국 헌법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른 협약당사국에 의한 검토과정에서 동아시아 국

가들의 유보조항은 모두 기각되었다.

어린이·청소년 권리협약에는 다섯 나라가 조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해까지 당사국이 되었고, 나머지 나라들도 2~3년 이내에 모두 협약당사국이 되었다. 반면,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경우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국가들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당사국이 된 반면 아세안 국가들 중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폴, 브루나이 등은 다른 국가들보다 아주 늦게 당사국이 되었다. 이 국가들은 여성 노동력의 필요와 종교적 갈등 등으로 인하여 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에 적극적이지 못하였다.

한국은 어린이·청소년 권리협약에 가입하면서 입양조건과 유죄혐의 혹은 유죄로 확정된 어린이·청소년의 입양은 헌법에 합치해야 한다고 유보조항을 제출하였다. 일본은 범죄행위를 범한 아동에 대한 수형절차를 자국 헌법이 정한 원칙에 따르고자 하였고, 중국은 양육 아동에 대한 모든 실정을 평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유보조항으로 제출하였다. 말레이시아가 가장 많은 다섯 개의 항목을 유보조항으로 제출하였으나 제37조 아동범죄 수형절차에 대한 것 이외에 다른 나라들의 유보조항과 중복되지 않는다.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관련하여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의한 결혼과 이혼 후 동등한 양육권의 보장 등에 대한 29조의 내용이 자국의 헌법규정에 합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보조항으로 제시하였다. 중국, 북한, 인도네시아 등은 협약 체약국 당사자들이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유보의견을 제출하였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자국의 사회문화적 조건을 고려하였고,

중국, 북한, 인도네시아 등은 자국의 주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인권을 정치화한 것이다.

국제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은 가장 적은 수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가입한 협약이다. 2013년 5월 인도네시아가 당사국이 되기 전까지는 필리핀만 당사국이었다. 필리핀이 이 협약에 가장 적극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필리핀의 경제가 해외디아스포라에 의한 본국 송금에 많이 의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외체류 자국민의 인권보호와 그들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동아시아 국가들 중 모든 인권협약의 당사국으로 참가하고 있는 나라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뿐이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북한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7개의 국제인권협약 당사국인 반면, 아세안 국가 중에는 캄보디아와 태국 두 나라뿐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여성과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국제인권법에는 상대적으로 일찍 당사국이 되었지만, 다른 인권협약에 대해서는 자국의 국가이익과 사회적 맥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 IV 정치적 권리, 시민적 자유, 그리고 난민 수용

각국 정부가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하고 국내의 법체계에 인권원칙과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실제 국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책을 집행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규범과 당위와 관련된 정부 정책일수록 그것들이 정치적 수사에 그치는 경우를 빈번

하게 관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인권현황에 대한 경험적 평가가 요구된다.

이 글은 동아시아 인권현황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프리덤하우스 지표(Freedom House Index: 이하 FHI)를 이용하고 있다. FHI는 국가별 지위를 자유(Free), 부분적 자유(Partly Free), 자유롭지 못함(Not Free) 세 단계로 부여한다. 이러한 지위는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 지표라는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또한 정치적 권리 지표와 시민적 자유 지표는 모두 일곱 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과 다른 지역의 인권현황을 비교하고 있다.

〈표 3〉은 2000년 이후 전 세계 국가들의 FHI 지위를 비교한 것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FHI 지위가 개선되고 있다. 그런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2000~2001년과 비교하여 두 나라가 자유로운 국가(Free)에서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Partly Free)로 감소하였다. 반면 전혀 자유롭지 않은 국가(Not Free)의 수는 3개 나라가 줄어든 여덟 나라이다.

FHI의 정치적 권리 지표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정치적 권리 지표는 선거과정, 정치적 다원주의와 참여, 정부의 기능 등 세 가지 하위 범주로 구성되며 최소 0점에서 최대 40점까지 부여된다. 세계평균은 2003년부터 2014년 사이 약 24점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아시아의 정치적 권리 지표는 세계평균보다 낮았다. 동북아시아는 약 21~22점을 아세안 국가들은 평균 11~14점 사이를 기록하였다.

**표 3.** 각 지역별 FHI 지위 비교

| 연도 | 지역 | 자유 | | 부분적 자유 | | 자유롭지 못함 | |
|---|---|---|---|---|---|---|---|
| | | 국가수 | % | 국가수 | % | 국가수 | % |
| 2014 | 아메리카 | 24 | 68 | 10 | 29 | 1 | 3 |
| | 아태지역 | 16 | 41 | 15 | 38 | 8 | 21 |
| | 유라시아 | 0 | 0 | 5 | 42 | 7 | 58 |
| | 유럽 | 37 | 88 | 5 | 12 | 0 | 0 |
| | 중동,북아프리카 | 1 | 6 | 5 | 28 | 12 | 66 |
| | 사하라이남아프리카 | 10 | 20 | 19 | 39 | 20 | 41 |
| 2000-2001 | 아메리카 | 23 | 66 | 10 | 28 | 2 | 6 |
| | 아태지역 | 18 | 46 | 10 | 26 | 11 | 28 |
| | 중동부유럽 | 11 | 41 | 10 | 37 | 6 | 22 |
| | 중동, 북아프리카 | 1 | 5 | 3 | 17 | 14 | 78 |
| | 사하라이남아프리카 | 9 | 19 | 24 | 50 | 15 | 31 |
| | 서유럽 | 24 | 96 | 1 | 4 | 0 | 0 |

자료: Freedom House, *Freedom House Index*. https://www.freedomhouse.org/(검색일: 2014년 9월 20일).

지역 내 국가들 간 비교를 해보면 국가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먼저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아세안 국가들 간 평균 10점 이상의 차이가 있다. 동북아시아에서도 중국과 북한의 정치적 권리 지표가 한국, 일본, 몽골의 점수보다 지나치게 낮지 않았다면 아세안 국가들과의 격차는 훨씬 더 컸을 것이다.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도 지표의 격차가 크다. 2014년 기준 인도네시아는 3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필리핀이 26점, 태국이 22점이었다. 반면 라오스, 베트남,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등은 10점 미만을 기록하였다. 이 분야 동아시아 인권현황의 동질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내 이질성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는 정치적 권리 지표와 민주주의 발전 수준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된 정체성을

**표 4.** 정치적 권리 지표(2003~2014년)

| 지역 | 국가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동북아 | 중국 | 3 | 3 | 2 | 2 | 2 | 2 | 2 | 1 | 2 | 2 | 2 | 2 |
| | 북한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일본 | 36 | 36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 | 몽골 | 34 | 34 | 33 | 34 | 33 | 33 | 34 | 35 | 35 | 35 | 36 | 36 |
| | 한국 | 32 | 33 | 36 | 36 | 36 | 36 | 36 | 36 | 36 | 36 | 36 | 35 |
| | 지역평균 | 21 | 21.2 | 21.6 | 21.8 | 21.6 | 21.6 | 21.8 | 21.8 | 22 | 22 | 22.2 | 22 |
| 아세안 | 브루나이 | 6 | 7 | 7 | 6 | 7 | 7 | 7 | 7 | 7 | 7 | 7 | 7 |
| | 캄보디아 | 11 | 9 | 11 | 11 | 11 | 11 | 11 | 11 | 9 | 9 | 9 | 10 |
| | 인도네시아 | 26 | 25 | 29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 | 라오스 | 3 | 2 | 1 | 1 | 1 | 1 | 1 | 1 | 0 | 0 | 0 | 1 |
| | 말레이시아 | 17 | 17 | 19 | 19 | 19 | 19 | 20 | 20 | 20 | 20 | 20 | 19 |
| | 미얀마 | 2 | 0 | −1 | −1 | −2 | −2 | −3 | −3 | 0 | 4 | 9 | 9 |
| | 필리핀 | 31 | 31 | 32 | 29 | 28 | 23 | 22 | 21 | 25 | 26 | 26 | 26 |
| | 싱가폴 | 17 | 17 | 17 | 17 | 17 | 17 | 17 | 17 | 17 | 19 | 19 | 19 |
| | 태국 | 30 | 30 | 30 | 29 | 4 | 8 | 12 | 12 | 12 | 21 | 22 | 22 |
| | 베트남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3 |
| | 지역평균 | 14.5 | 14 | 14.7 | 14.3 | 11.7 | 11.6 | 11.9 | 11.8 | 12.2 | 13.8 | 14.4 | 14.6 |
| 세계평균 | | 24.08 | 23.96 | 24.21 | 24.53 | 24.56 | 24.41 | 24.4 | 24.1 | 24.15 | 24.3 | 24.23 | 24.34 |

자료: Freedom House, *Freedom House Index.*
참조: 최저 0점, 최대 40점

가지고 지리적으로 특수한 문화적 가치를 형성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개별 국가들이 인권을 대하는 태도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개별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는 정부가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적 권리와 민주주의 발전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여 준다. 그림의 민주주의 발전 수준은 POLITY IV 데이터셋의 민주주의 점수를 활용하였다. 그림은 분명하게 두 변수 간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태국의 경우 쿠데타 등 급격한 국내 정치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2006년에는 정치적 권리의 점수가 29점이었지만 민주주의 점수는 0점이었다. 한편 2008년에는 민주주의 점수가 5점이고 정치적 권리 점수는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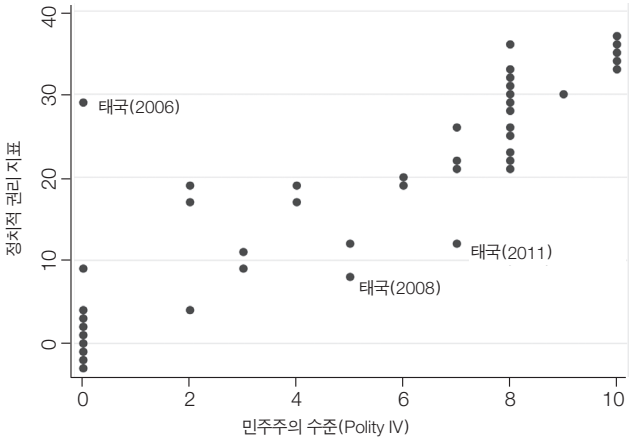


자료: Freedom House, *Freedom House Index*; Monty G. Marshall, Tedd R. Gurr, and Keith Jaggers (2014), *Polity IV Project: Political Regime Characteristics and Transitions, 1800-2013*. http://www.systemicpeace.org/polity/polity4.htm(검색일: 2014년 9월 20일).

**그림 1.** 정치적 권리와 민주주의의 산포도(2003~2013년)

점, 2011년에는 민주주의 점수가 7점이고 정치적 권리는 12점을 기록하였다. 태국의 경우 민주주의가 회복되면서 정치적 권리 점수도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21점과 22점을 얻었다.

FHI의 시민적 자유 지표는 표현과 신념의 자유, 결사와 단체 결성의 자유, 법치, 개인적 자율성과 권리 등 하위 지표로 구성되며 최소 0점에서 최대 60점까지 부여된다. 〈표 5〉에 의하면 전 세계평균은 약 36~37점이며, 동북아 지역평균은 32~34점, 아세안 지역평균은 23~26점이었다. 지역의 평균 점수가 세계평균 점수보다 낮지만 역내 국가들의 성격상 편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치적 권리 지표와 마찬가지로 한국, 일본, 몽골은 동아시아의 어떤 나라보다 높은 시민적 자유 점수를 얻었다. 2014년에 이 세 나라 이외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나라는 필리핀으로 37점을 기록하였다.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차이가 정치적 권리 지표 점수와 마찬가지로 크다. 북한의 시민적 자유 점수가 가장 낮고 중국의 점수도 높지 않은 15점이었다.

아세안 국가들 중에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필리핀은 같은 기간 동안 정치적 권리 지표 점수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일정 수준으로 큰 폭의 증감 없이 꾸준히 시민적 자유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라오스가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으며 싱가포르는 정치적 권리보다 시민적 자유에서 상대적으로 순위가 높아졌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아세안 국가들도 지리적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는 데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표 5.** 시민적 자유 지표(2003~2014년)

| 지역 | 국가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동북아 | 중국 | 12 | 10 | 15 | 15 | 15 | 16 | 14 | 16 | 15 | 14 | 15 | 15 |
| | 북한 | 0 | 0 | 0 | 0 | 1 | 2 | 2 | 1 | 1 | 2 | 3 | 3 |
| | 일본 | 52 | 52 | 52 | 51 | 51 | 51 | 51 | 51 | 51 | 51 | 51 | 53 |
| | 몽골 | 48 | 49 | 49 | 49 | 49 | 49 | 48 | 50 | 50 | 50 | 50 | 50 |
| | 한국 | 51 | 49 | 49 | 49 | 51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 | 지역평균 | 32.6 | 32 | 33 | 32.8 | 33.4 | 33.6 | 33 | 33.6 | 33.4 | 33.4 | 33.8 | 34.2 |
| 아세안 | 브루나이 | 25 | 23 | 24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 | 캄보디아 | 20 | 23 | 23 | 24 | 24 | 24 | 23 | 21 | 20 | 21 | 20 | 20 |
| | 인도네시아 | 32 | 34 | 34 | 35 | 35 | 37 | 36 | 35 | 35 | 35 | 35 | 34 |
| | 라오스 | 9 | 11 | 12 | 12 | 12 | 12 | 12 | 12 | 12 | 12 | 11 | 11 |
| | 말레이시아 | 25 | 28 | 30 | 31 | 29 | 27 | 29 | 29 | 29 | 29 | 28 | 28 |
| | 미얀마 | 6 | 7 | 6 | 6 | 6 | 5 | 5 | 5 | 5 | 10 | 17 | 17 |
| | 필리핀 | 42 | 42 | 42 | 43 | 41 | 38 | 38 | 36 | 36 | 36 | 37 | 37 |
| | 싱가폴 | 26 | 29 | 34 | 33 | 32 | 32 | 31 | 31 | 31 | 33 | 33 | 32 |
| | 태국 | 42 | 43 | 39 | 38 | 32 | 31 | 32 | 32 | 30 | 31 | 31 | 32 |
| | 베트남 | 11 | 12 | 15 | 17 | 19 | 19 | 20 | 19 | 18 | 17 | 17 | 17 |
| | 지역평균 | 23.8 | 25.2 | 25.9 | 26.2 | 25.3 | 24.8 | 24.9 | 24.3 | 23.9 | 24.7 | 25.2 | 25.1 |
| 전 세계평균 | | 36.6 | 37.2 | 37.6 | 37.9 | 37.8 | 37.7 | 37.5 | 37.3 | 37.2 | 37.0 | 36.8 | 36.7 |

자료: Freedom House, *Freedom House Index.*
참조: 최저 0점, 최대 6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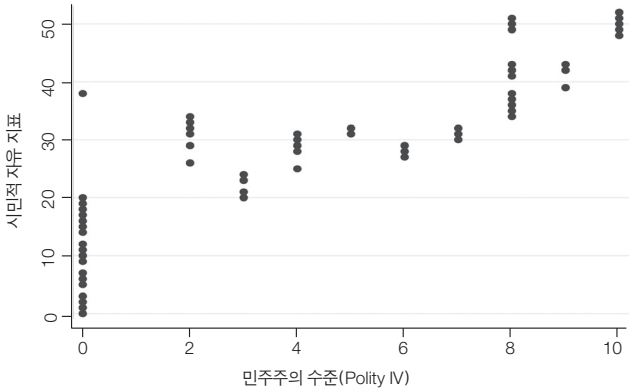


자료: Freedom House, *Freedom House Index*; Monty G. Marshall, Tedd R. Gurr, and Keith Jaggers (2014), *Polity IV Project*.

**그림 2.** 시민적 자유와 민주주의의 산포도(2003~2013년)

시사한다.

시민적 자유도 민주주의 발전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는 Polity IV 데이터셋의 민주주의 점수와 FHI의 시민적 자유 점수의 산포도이다. 정치적 권리 지표와 마찬가지로 두 변수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민주주의 수준이 5점까지는 양의 상관관계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 민주주의 점수가 0인 경우 시민적 자유 점수가 낮기 때문에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단계에서도 양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점수가 6점 이상인 국가들 사이에서 시민적 자유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아시아라는 지리적, 문화적 특성도 중요하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 발전 정도가 각국의 인권현황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하면 동아시아 지역 내의 국가들이 인권에 대한 태도가 동질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일본, 몽골은 다른 국가들보다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인권을 향유하고 있다. 반면, 중국, 북한,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인권을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가 이뤄지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의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그런데 동아시아의 인권현황이 시대적으로는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 인권의 특수성 혹은 상대성은 동시대 공간적 구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문화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FHI의 일곱 가지 하위 지표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비교를 한다면 동아시아 인권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 관련 세부 지표의 점수들이다. 동아시아 지역평균과 세계평균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개인의 자율성과 권리 지표에서 세계평균과 지역평균의 격차는 1.1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가장 격차가 큰 지표는 정치다원주의 및 정치참여이며 그 차이는 3.0점이다. 그 다음 큰 차이는 선거과정과 법치의 분야에서 평균의 차이는 2.6점이다. 세계평균과 주로 정치제도적인 차원에서 동아시아인들의 인권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별로 시기에 따른 지표 점수를 비교해 보면, 태국과 필리핀은 각각 11점과 9점이나 감소하였다. 연속되는 쿠데타에 따른

**표 6.** 정치적 권리 및 시민적 자유의 세부 지표 비교(2014년/2006년)

| 국가 | 지위 | 선거과정 | 정치다원주의/선거 참여 | 정부의 기능 | 표현과 신념의 자유 | 결사와 조직의 자유 | 법치 | 개인의 자율성과 권리 |
|---|---|---|---|---|---|---|---|---|
| 중국 | NF | 0 | 1 | 2 (+1) | 4 | 3 (+1) | 2 | 6 (-1) |
| 북한 | NF | 0 | 0 | 0 | 0 | 0 | 0 | 3 (+3) |
| 일본 | F | 12 | 15 | 10 | 14 (+1) | 11 (+1) | 15 | 13 |
| 몽골 | F | 11 (+2) | 16 (+1) | 9 (-1) | 15 | 11 (+1) | 12 | 12 |
| 한국 | F | 11 | 14 | 10 | 14 | 11 (-1) | 13 (+1) | 12 (+1) |
| 브루나이 | NF | 0 | 3 | 3 (+1) | 6 | 3 | 6 | 8 |
| 캄보디아 | NF | 3 | 4 (-1) | 3 | 9 | 3 (-3) | 2 | 6 (-1) |
| 인도네시아 | PF | 11 | 13 | 6 | 12 (+1) | 8 | 5 (-2) | 9 |
| 라오스 | NF | 0 | 0 (-1) | 1 (+1) | 4 | 0 (-1) | 2 | 5 |
| 말레이시아 | PF | 6 | 7 | 6 | 8 (-2) | 6 | 5 (-1) | 9 |
| 미얀마 | NF | 3 (+3) | 6 (+5) | 3 (+3) | 7 | 4 | 1 | 5 |
| 필리핀 | PF | 9 (+2) | 10 (-4) | 7 (-1) | 14 (-1) | 8 (-1) | 5 (-4) | 10 |
| 싱가폴 | PF | 4 | 8 (+2) | 7 | 9 | 4 | 7 (-1) | 12 |
| 태국 | PF | 8 (+1) | 9 (-3) | 5 (-3) | 10 (-1) | 6 (-2) | 6 (-2) | 10 (-1) |
| 베트남 | NF | 0 | 1 | 2 (+1) | 4 (+1) | 1 (-1) | 4 | 8 |
| 지역평균 | | 5.2/4.8 | 7.1/7.3 | 4.9/4.8 | 8.7/8.4 | 5.3/5.4 | 5.7/6.2 | 8.5/8.4 |
| 세계평균 | | 7.8/7.7 | 10.1/10.1 | 6.5/6.7 | 11.1/11.5 | 7.6/8.0 | 8.3/8.7 | 9.6/9.6 |

자료: Freedom House, *Freedom House Index*.

참조 1: 괄호 안의 숫자는 2006년과 비교하여 2014년의 증감을 나타낸 것임.

참조 2: 지역평균과 세계평균은 각각 2014년 평균과 2006년 평균을 나타낸 것임.

참조 3: F는 자유로움, PF는 부분적으로 자유로움, NF는 자유롭지 않음을 의미함.

정치적 격변, 인종갈등의 심화 등으로 인해 태국과 필리핀은 정치적 다원주의를 실현하지 못했고 법에 의한 통치원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다. 추가적으로 태국은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결사와 조직의 자유에서 인도네시아는 법에 의한 통치의 측면에서 점수가 낮아졌다.

같은 기간 동안 분야별로 비교하면, 동아시아에서 선거과정에서 인권의 보호 수준이 높아졌다. 몽골, 미얀마, 필리핀, 태국 등에서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아시아에서는 정치다원주의와 선거 참여 부문에서 퇴보하였으며, 많은 나라에서 결사와 조직의 자유와 법에 의한 지배도 퇴보하여 인권의 침해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인권은 언제나 정치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는 현재 국제정치체계에서 인권보호의 일차적 책임이 주권정부에게 있고 개별 국가의 주권은 다른 나라의 주권에 의해 침해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존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권의 의제가 인도주의의 의제와 중복되는 경우 정치화의 수준은 훨씬 높아진다. 이러한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난민의 문제이다. 난민은 공동체를 떠나 다른 공동체에 속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연이 지니는 인권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Arendt 1966). 그들의 권리는 국제사회의 인권법, 인도주의법 등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표 7〉은 연도별 동아시아 국가에 체류하는 난민들의 수를 나타낸다. 단순 통계의 규모만을 고려한다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많은 난민을 수용하며 국제사회의 책임을 나누어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통계의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면 다른

**표 7.** 동아시아의 난민 수용 현황(2003~2013년)

| 국가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중국 | 299354 | 299375 | 301041 | 301027 | 301078 | 300967 | 300989 | 300986 | 301018 | 301037 | 301045 |
| 북한 | | | | | | | | | | | |
| 일본 | 2266 | 1967 | 1941 | 1844 | 1794 | 2019 | 2332 | 2586 | 2649 | 2581 | 2576 |
| 몽골 | | | | 5 | 5 | 11 | 11 | 12 | 1 | 4 | 8 |
| 한국 | 25 | 44 | 69 | 96 | 118 | 172 | 268 | 358 | 401 | 487 | 513 |
| 브루나이 | | | | | | | | | | | |
| 캄보디아 | 76 | 382 | 127 | 99 | 179 | 164 | 135 | 129 | 64 | 77 | 64 |
| 인도네시아 | 233 | 169 | 89 | 301 | 315 | 369 | 798 | 811 | 1006 | 1819 | 3195 |
| 라오스 | | | | | | | | | | | |
| 말레이시아 | 7424 | 24905 | 33693 | 37170 | 32658 | 36671 | 66137 | 81516 | 86680 | 90185 | 97474 |
| 미얀마 | | | | | | | | | | | |
| 필리핀 | 108 | 107 | 96 | 100 | 106 | 104 | 95 | 243 | 125 | 141 | 163 |
| 싱가폴 | 1 | 1 | 3 | 1 | 10 | 10 | 7 | 7 | 3 | 3 | * |
| 태국 | 119053 | 121139 | 117053 | 133117 | 125643 | 112932 | 105297 | 96675 | 89253 | 84479 | 136474 |
| 베트남 | 15360 | 2360 | 2357 | 2357 | 2357 | 2357 | 2357 | 1928 | 990 | | |

자료: UNHCR, *UNHCR Statistical Online Population Database*. http://www.unhcr.org/pages/4a013eb06.html(검색일: 2014년 8월 30일).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

먼저 중국에 체류하는 난민은 중국계 베트남인들이 대부분으로 1960년대 베트남 정부의 경제개혁 과정에서 피난을 온 사람들이다. 베트남 정부가 중국계 소상공인들에 대한 중과세와 강제재산 압류조치 등을 취하자 중국과 베트남의 국경지역으로 우선적으로 난민을 수용하였던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들 이외에 소수의 이란 출신 난민을 수용하기는 하였지만, 다른 나라 출신의 난민들을 추가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2009년과 2011년 미얀마에서 발생한 심각한 폭력사태에 의해 중국으로 대거 유입된 피난민들을 중국 정부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시적 체류만을 허가하였다(송영훈 2013).

일본에도 2013년 말에 약 2,600명의 난민이 체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그런데 일본에 체류하는 난민에는 보트피플로 불리는 베트남 난민들과 북한 국적의 재일한인 등이 포함되어있고, 일본 내에서 새롭게 난민으로 인정받고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 다만 최근 일본은 2010년 태국에서 발생한 반정부시위 중 자국의 취재기자가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해 정치적 보복 성격으로 태국의 난민캠프에서 미얀마 난민을 일본을 재정착시키도 하였다. 2013년 잠시 중단되었으나 일본은 점차 난민재정착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한·중·일 3국 중 가장 활발하게 난민문제에 임하고 있는 나라이다. 2013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독자적인 난민법이 시행되면서 난민신청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렇지만 난민신청자의 수가 급증하는 반면 난민신청을 심사할 수 있는 전

**표 8.** 북한 출신 난민 수용 현황(2003~2013년)

| 국가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오스트레일리아 | 3 | 3 | 6 | 8 | 15 | 14 | 15 | 25 | 29 | 29 | 30 |
| 벨기에 | | | | | 7 | 9 | 13 | 22 | 31 | 61 | 68 |
| 캐나다 | 3 | 4 | 4 | 4 | 4 | 4 | 4 | 23 | 64 | 119 | 127 |
| 덴마크 | 7 | 7 | 7 | 7 | 8 | 8 | 9 | 9 | 14 | 9 | 9 |
| 독일 | 258 | 276 | 193 | 239 | 204 | 180 | 156 | 146 | 193 | 138 | 112 |
| 아일랜드 | 5 | 5 | 5 | 5 | 6 | 6 | 6 | 6 | 5 | 1 | * |
| 이스라엘 | | | | | 2 | 2 | 2 | 2 | 1 | 1 | * |
| 키르키스스탄 | | | | 2 | 5 | 6 | 7 | 3 | 2 | 2 | |
| 룩셈부르크 | | | | | | | | | | | 6 |
| 멕시코 | | | 1 | 1 | 1 | 1 | 1 | 1 | 1 | | |
| 네덜란드 | 14 | 15 | 18 | 20 | 27 | 29 | 31 | 32 | 36 | 58 | 58 |
| 뉴질랜드 | 1 | 1 | 1 | | 1 | 1 | 1 | 1 | | | |
| 노르웨이 | 3 | 3 | 4 | 5 | 9 | 13 | 14 | 14 | 14 | 14 | 14 |
| 폴란드 | | | | | | | | | 1 | 1 | * |
| 러시아 | | | | | | 6 | 10 | 14 | 18 | 44 | 74 |
| 스페인 | | | | | | | | | 1 | 1 | * |
| 스웨덴 | 2 | 2 | 6 | 7 | 7 | 7 | 8 | 8 | 9 | 7 | 8 |
| 스위스 | 1 | 1 | 1 | 6 | 6 | 6 | 4 | 4 | 4 | 4 | * |
| 영국 | | 17 | 33 | 64 | 281 | 570 | 574 | 581 | 603 | 619 | 630 |
| 미국 | 7 | 9 | 9 | 30 | 22 | 23 | 25 | 25 | 25 | 23 | 23 |
| 예멘 | | | | | | 1 | 1 | 1 | 1 | 1 | * |

자료: UNHCR, *UNHCR Statistical Online Population Database*. http://www.unhcr.org/pages/4a013eb06.html(검색일: 2014년 8월 30일).

문인력의 수가 한정되어 있어 심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한국도 난민재정착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국제사회의 책임을 나누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낮은 난민인정률, 난민의 실질적 사회정착 등에 대해서는 인권적 차원에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한·중·일 3국의 공통점은 국가의 경제규모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의 인도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분쟁 혹은 자연재해에 의해 난민이 발생하였을 때 그들이 주변국으로 먼저 이동하는

것이 우선적인 현상이지만, 난민들을 재정착시킨다거나 자국으로 입국하는 난민들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동아시아에서 인권에 대한 논의가 정치화되어 있다는 사실은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수용하는 국제사회의 태도와 비교하면 더욱 뚜렷해진다. 〈표 8〉은 세계 각국에 수용된 북한 출신 난민들의 수를 나타낸다. 각 국가별로 난민통계를 보고하는 방식이 다르고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실제 두 나라가 수용한 북한 난민의 수보다 적게 보고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탈북민들의 인권보호를 선언적으로 주장 하면서도 실제 동아시아 국가들은 공식적으로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비공식적으로 탈북민이 원하는 경우 한국으로의 입국을 도와주기는 하였으나, 공식적으로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과의 외교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송영훈 2012). 난민문제는 난민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송출국 정부와 수용국 정부의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난민의 인권보호는 인도주의적인 과제이면서 동시에 높은 수준의 정치적인 의제이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국내 상황과 대외관계에서 국가이익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난민에 대한 태도는 다른 지역의 국가들의 태도와 차이가 없다.

## V 동아시아 인권과 경험적 분석의 함의

동아시아 인권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쟁점을 제기한다. 첫째는 인권의 개념에 지역의 형용사를 연결할 수 있는가와 관련되며, 둘째는 동아시아의 인권은 다른 지역의 인권과 구별되는 특별한 것인가와 관련된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명쾌한 대답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인권이 무엇인가라는 존재론적 접근을 하는 경우 논쟁은 더욱 깊어 진다.

이 연구는 인권에 대한 존재론적 접근보다 인권을 어떻게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인식론적이고 방법론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인권이라는 개념이 모두가 만족할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개념이라면 인권의 경험적 측면을 분석하는 것도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특히 동아시아 인권이 특수하다면 이는 인권의 상대주의적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런데 인권의 상대주의적 가설이 성립하려면 특정 지역 혹은 문화의 인권은 다른 지역 혹은 문화와 이질적이면서 같은 지역 혹은 문화 내에서는 동질적인 특성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인권규범의 동아시아적 수용의 측면에서 보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다양한 국제인권법에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너무 늦지 않게 가입을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어린이·청소년 권리협약 등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가입을 하였다. 그런데 여덟 개의 인권협약에 당사국으로 참여하면서 아시아 각국들은 다양한 형태의 유보조항을 제출하였다. 유보조항의 내용들을

통해서는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공통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유보조항은 자국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자국의 헌법질서를 최우선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즉,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과정에서 동아시아적 동질성을 충분히 뒷받침할만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현황에 대한 분석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 그리고 난민 수용에 대한 태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동아시아의 정치적 권리 지표와 시민적 자유 지표는 일반적으로 세계적 평균보다 낮았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는 역내의 지표가 국가별로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다. 즉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몽골이 비슷하게 높은 인권수준을 보여 주었으며, 아세안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권현황을 보여 주었다. 그런데 이 국가들과의 편차가 워낙 컸다. 이렇게 지역 내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는 이유는 문화적 동질성 보다 각 국가별 민주주의의 발전 수준에 따라 인권보호의 수준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의 상대성은 동시대의 문화 간 차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같은 문화 내에서 통시적 차이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선거과정에 대한 정치적 권리는 향상되고 있는 반면 표현과 신념의 자유, 결사의 자유, 법의 지배라는 시민적 자유의 수준은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각 국가의 인권지표는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사이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이 연구는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국제인권규범을 수용하는 방

식과 실제 국가별 인권현황을 진단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경험적 분석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인권의 추상성과 종합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이 연구는 인권의 모든 측면을 다 보여줄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철학적 담론이 존재론적 논의에만 그친다면 실제 인권실현을 위한 현실진단을 분석적으로 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정부들의 인권에 대한 태도를 경험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인권은 개념적으로 정치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의 시작이 되는 동아시아 인권은 특수한가라는 질문도 인권의 정치성이 반영된 질문이다. 그렇지만 인권이 어느 정도 정치화되는지는 각 사회와 구성원들이 인권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특히 인권담론이 아시아적 가치와 연결되면서 국가의 주권과 정당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인권의 정치화를 최소화하고 실효적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더욱 발전된 경험적 인권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남국. 2010. “문화적 권리와 보편적 인권: 세계 인권 선언에서 문화다양성 협약까지,” 『국제정치논총』 제50집 1호, 261-284.

다니엘 벨. 1996. “서구적 인권 체제에 대한 동아시아의 도전.” 『계간사상』 겨울호(통권 제131호), 46-56.

문성원. 1998. “현대성과 보편성: 인권, 자유주의, ‘배제의 배제’.” 『철학』 제54집, 259-290.

박주원. 2013. “인권의 ‘정치적’ 재구성: 자유권, 사회권을 넘어 정치적 권리로, 국민주권을 넘어 새로운 정치적 주권을 향하여.” 『현상과인식』 통권 121호, 17-38.

변창구. 2011. “ASEAN의 인권문제와 내정불간섭원칙의 딜레마.” 『국제정치연구』 제14집 제2호, 1-20.

송영훈. 2012. “해외탈북이주 현상의 현황과 쟁점.”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12-15.

_____. 2013. “국제난민이주와 안보.” IOM 이민정책연구원 워킹페이퍼 시리즈 No. 2013-17.

잭 도널리. 1996. “개념의 보편성과 아시아적 가치.” 『계간사상』 겨울호(통권 제131호), 28-45.

정영선. 2000. “인권사상의 재인식과 인권의 보편성: 권리 주체의 재인식과 ‘상대적 보편성’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16권, 207-225.

조효제. 2007. 『인권의 문법』. 서울: 후마니타스.

한상진. 1996. “인권 논의에서 왜 동아시아가 중요한가.” 『계간사상』 겨울호(통권 제131호), 11-27.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AAA). 1947. “Statement on Human Rights.” *American Anthropologists*, New Series, Vol. 19, No. 4, 539-543. October.

_____. 1999. “Declaration on Anthropology and Human Rights.”. http://www.aaanet.org/about/Policies/statements/Declaration-on-Anthropology-and-Human-Rights.cfm(검색일: 2014년 9월 16일).

Arendt, Hannah. 1966.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Harcourt.

Barry, Brian. 1992. “The Quest for Consistency: A Special View.” *Free Movement: Ethical Issues in the Transnational Migration of People and Money*, 279-287, Brian Barry and Robert E. Goodwin (ed).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Beitz, Charles B. 1979. *Political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_____. 1983. "Cosmopolitan Ideas and National Sentiment." *Journal of Philosophy*, Vol. 80, No. 10, 591-600.

Charlesworth, Hilary. 2010. "Human Rights and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Michele Langfield, William Logan, and Máiréad NicCraith (eds.) *Cultural Diversity, Heritage, and Human Rights: Intersections in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Routledge.

DeLaet, Debra L. 2006. *The Global Struggle for Human Rights: Universal Principles in World Politics*. Belmont, CA: Wadsworth Cengage Learning.

Donnelly, Jack. 2003. *Universalism and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2nd ed.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Engle, Karen. 2001. "From Skepticism to Embrace: Human Rights and the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from 1947-1999." *Human Rights Quarterly*, Vol. 23, 536-559.

Freedom House, *Freedom House Index*. https://www.freedomhouse.org/ (검색일: 2014년 9월 20일).

Frost, Mervyn. 1996. *Ethic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 Constitutive Theory*.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dale, Mark. 2009. *Surrounding to Utopia: An Anthropology of Human Right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Gregg, Benjamin. 2012. *Human Rights as Social Constru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Kim, Dae Jung. 1994. "A Response to Lee Kuan Yew: Is Culture Destiny?: The Myth of Asia's Anti-Democratic Values." *Foreign Affairs*, Vol. 73, No, 6, 189-194.

Marshall, Monty G., Tedd R. Gurr and Keith Jagger. 2014. *Polity IV Project: Political Regime Characteristics and Transitions, 1800-2013*. http://www.systemicpeace.org/polity/polity4.htm(검색일: 2014년 9월 20일).

Morsink, Johannes. 1999.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rigins, Drafting, and Intent*.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Mutua, Makau. 2002. *Human Rights: A Political and Cultural Critique*.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O'Neill, William. 2008. "What We Owe to Refugees and IDPs: An Inquiry into the Rights of the Forcibly Displaced." In *Refugee Rights: Ethics, Advocacy, and Africa*. Davidl Hoolenbach, SJ (ed). Wahs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7-49.

Renteln, Alison Dundes. 2013. *International Human Rights: Universalism versus Relativism*. New Orleans, LA: Quid Pro Books.

Sen, Amartya K. 1999. "Democracy as a Universal Value." *Journal of Democracy*, Vol. 10, No. 3, 3-17.

Singer, Peter and Renata Singer. 1988. "The Ethics of Refugee Policy." In *Open Border? Closed Society? The Ethical and Political Issues*. Mark Gibney (ed.). Westport, CT: Greenwood, 111-130.

Unite Nations,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https://treaties.un.org/(검색일: 2014년 9월 30일).

UNHCR, *UNHCR Statistical Online Population Database*. http://www.unhcr.org/pages/4a013eb06.html(검색일: 2014년 8월 30일).

Walzer, Michael. 1983. *Spheres of Justice*. New York: Basic Books.

Weiner, Myron. 1996. "Bad Neighbors, Bad Neighborhoods: An Inquiry into the Causes of Refugee Flow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1, No. 1, 5-42.

Zakaria, Fareed. 1994. "Culture Is Destiny: A Conversation with Lee Kuan Yew." *Foreign Affairs*, Vol. 73, No, 2, 109-126.

## 필자 소개


### 송영훈 Song, Young Hoon

통일연구원(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 학사,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 정치학 박사

논저 "테러리즘과 난민문제의 안보화", "International Humanitarianism and Refugee Protection: Consequences of Labeling and Politicization.", "Conflict, International Response, and Forced Migration in Sub-Saharan Africa, 1980-2007."

이메일 younghoon.song@gmail.com